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 기 열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기열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가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해서만 고장 및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도로(차도, 보도)의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도로 자체에 대한 포트홀(pot hole)이나 보도블록의 파손 등을 발견·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도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의 신고 포상금에 준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거리모니터링단과 차도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도로 파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나 모니터링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시민 모두가 도로 파손의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로 파손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원활한 도로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